

## 조문 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 제·개정 이유

- 2024년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작권법 제31조에 제5항에 의한 도서관 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 수령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지정 단체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나. 지정 요건 :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른 이행 요건 설정(▲분배신청 서류 간소화, ▲미분배보상금 저작물 분류 전 조치 시행, ▲분배 노력 평가 지표 추가 설정, ▲책임경영 및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 ▲출처명시 의무 안내 강화 및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승인을 받고, '25.12.31.까지 지정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등)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조치